

■ 자격 확인 서류 안내

구비서류	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 서류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(재외 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 ※ 2020.12.21.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
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	· 발급 구분 : 본인발급 / 용도 :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 /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※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[발급용도 : 기타선택 → "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" / 제출처 : "의왕역 SK VIEW"로 설정하여 발급]
	인감도장		·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
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	·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 사항·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배우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·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"상세"로 발급 (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.1.1부터)
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(3년 이상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배우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(상세)		·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"상세"로 발급 (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.1.1부터)
	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		·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(진료개시일,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) ※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23.07.10.~현재까지 / 전체출력
추가 서류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(보리세대) 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 사항·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		· 배우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·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·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 (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비속	·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·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/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(상세)		·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. 아래의 경우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-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"상세"로 발급
	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		·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(진료개시일,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) ·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25.07.10.~현재까지 / 전체출력
	복무확인서	본인	·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(군복무기간 명시)
부적격 의심 세대	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	본인 또는 세대원	·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(가족대장등본 포함), 무허가건물확인서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), 공동주택가격확인서, 철거예정증명서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"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"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
	당첨사실 소명서류		·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	해외근무자		· 해외 단신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 서류
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·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(용도 :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 위임) ·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
	신분증	대리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(재외 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 ※ 2020.12.21.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
견본주택 비치 서식			·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/ 서약서(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포함) / 청약 가점내용 확인서 / 위임장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07.10.(금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.

※ 부적격 의심 세대는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은 취소됩니다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,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